

서울특별시민원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877
----------	-----

2009년 7월 10일
행정자치위원회

1. 심사결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9년 5월 15일, 김덕배 의원외 10명 제안
- 나. 회부일자 : 2009년 5월 21일 회부
- 다. 상정결과 : 제216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
(2009년 6월 26일) 상정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: 김덕배 의원)

□ 제안 이유

[시행 2006. 6. 4] [대통령령 제19492호, 2006. 5.30, 전부개정]
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
적합하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가. 제1조 중 “제29조의”를 “제37조의”로 개정함(안 제1조).
- 나. 제2조제1항제3호 “영 제29조제1항”을 “영 제37조제1항”으로
개정함(안 제2조제1항제3호).
- 다. 제2조제2항 “영 제29조제2항”을 “영 제37조제2항”으로 개정함
(안 제2조제2항).

□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.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1부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

(전문위원 : 박용훈)

□ 검토요지

가. 상위법령 준용 조항 변경(안 제1조·안 제2조제1항제3호·안 제2조제2항)

- 서울특별시민원조정위원회조례(이하 ‘민원조정위조례’라 함) 제1조 및 제2조는 서울특별시민원조정위원회(이하 ‘민원조정위’라 함)의 구성·기능·운영의 근거로서 상위법령인 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‘민원사무처리시행령’이라 함) 준용조항인 제29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- 「민원사무처리시행령」은 대통령령 제15597호로써 1997년 12월 31일 제정되어 지금까지 총 9차에 걸쳐 개정되었는 바, 그 중 2006년 3월 3일 개정된 「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」 전부개정을 반영하여, 2006년 5월 30일 대통령령 제19492호로써 「민원사무처리시행령」이 전부개정되어, 민원조정위원회 설치·운영근거 조항인 제29조가 제37조로 개정된 바 있음.
- 「민원사무처리시행령」은 동 시행령을 인용하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경과조치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, 동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동 시행령의 시행일(2006년 6월 4일)에 위반되지 않도록 「민원조정위조례」를 개정했어야 하는 사안임.
- 지방자치제도의 운영 근거가 되는 조례의 체계 적합성 및 완성도 등을 고려할 때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조례는 그 법적인 효력과 시민의 신뢰도 측면에서 심각한 하자를 초래할 수 있고, 무엇보다 조례제정권자인 서울특별시의회가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최고기구로서 가지는 권위와 위상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,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 할 것이며,
- 이 밖에도 「민원조정위조례」의 제명 띄워 쓰기를 비롯한 “알기쉬운 법령만들기”에 의한 조문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수정안의 요지 : 없 음

6. 심 사 결 과 : 수정안가결(재석 6명, 전원일치)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서울특별시민원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877
----------	-----

제안년월일 : 2009년 7월 10일
제안자 : 행정자치위원장

1. 수정이유

본 개정안 중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직명을 변경하는 동시에 조례이용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제1조 중 “제29조”를 “제37조”로 개정함(안 제1조).

나. 제2조제1항제3호 중 “영 제29조제1항”을 “영 제37조제1항”으로 개정함(안 제2조제1항제3호).

다. 제2조제2항 중 “영 제29조제2항”을 “영 제37조제2항”으로 개정함(안 제2조제2항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없음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1부.

서울특별시민원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민원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민원조정위원회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”로 한다.

안 제1조 중 “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(이하“영”이라한다)”를 “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”이라 하고, “서울특별시민원조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를 “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”로 한다.

안 제2조 제1항 “위원회”를 “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로 하고, 제3호 중 “영”을 “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(이하“영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며,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제2항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며, “해당위원회”를 “해당 위원회”로 한다.

안 제3조 제2항 중 “기타민원”을 “그 밖의 민원”으로 한다.

안 제4조 후단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안 제6조 제1항 중 “7인”을 “7명”으로 하고, 제2항 후단 중 “2인이

상”을 “2명 이상”으로 한다.

안 제7조 조명 “(회의의 소집등)”을 “(회의의 소집 등)”으로 한다.

안 제7조 제2항 중 “4인”을 “4명”으로 한다.

안 제8조 조명 “(회의록등)”을 “(회의록 등)”으로 한다.

안 제8조 제2항 후단 중 “내용등”을 “내용 등”으로 한다.

안 제9조 제1항 중 “간사1인”을 “간사 1명”으로 하고, “약간인”을 “약간 명”으로 하며, 제2항 “민원담당관”을 “민원조사담당관”으로 하고, “민원담당관 민원담당사무관”을 “민원조사담당관 민원조사담당사무관”으로 한다.

안 제11조 조명 “(수당등)”을 “(수당 등)”으로 한다.

안 제11조 제2항 후단 중 “소요되는”을 “드는”으로 한다.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29조의제2항 각호의 사항 및 타법령에 의하여 해당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는 민원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</p> <p>제3조(구성)①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행정(1) 부시장이 된다.</p> <p>② 위원은 법조계, 학계, 언론계, 종교계, 노동계, 경제계, 여성계, 기타민원사항에 관련된 분야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받은 자로 한다.</p> <p>③ 위원장은 민원인이 자기가 제출한 민원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특정인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주기를 희망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외에 그 특정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</p> <p>제4조(위원의 위촉방법) 위원은 위원회 회의 개최시마</p>	<p>② 영 제37조의제2항</p> <p>제3조(구성)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위원의 위촉방법)(현행과 같음)</p>	<p>② 영 제37조의제2항 각 호</p> <p>해당 위원회</p> <p>제3조(구성)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그 밖의 민원사항에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위원의 위촉방법)</p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고, 서기는 <u>민원담당관 민원담당사무관</u>이 된다.</p> <p>제10조(의견청취 및 조사) ① 위원회는 민원인과 민원사항과 관련된 서울특별시 소속 국장 또는 과장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.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민원사항과 관련된 서울특별시 소관의 서류를 열람, 조사할 수 있다.</p> <p>제11조(수당등)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② 제1항의 위원(공무원인 위원은 제외한다)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료조사에 <u>소요되는</u>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.</p>	<p>제10조(의견청취 및 조사) ①~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1조(수당등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	<p>이 되고, 서기는 <u>민원조사담당관 민원조사담당사무관</u>이 된다.</p> <p>제10조(의견청취 및 조사) ①~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1조(수당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드는 ----- -----,</p>

서울특별시민원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민원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민원조정위원회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(이하“영”이라한다)”를 “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”이라 하고, “제29조”를 “제37조”로 하며, “서울특별시민원조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를 “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위원회”를 “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로 하며 제3호 중 “영”을 “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”로 하고, “제29조제1항”을 “제37조제1항”으로,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며, 제2항 중 “제29조제2항”을 “제37조의제2항”으로,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, “해당위원회”를 “해당 위원회”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기타민원”을 “그 밖의 민원”으로 한다.

제4조 후단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7인”을 “7명”으로 하고, 제2항 후단 중 “2인이상”을 “2명 이상”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4인”을 “4명”으로 한다.

제8조 조문 제목 “회의록등”을 “회의록 등”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 후단 중 “내용등”을 “내용 등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간사1인”을 “간사 1명”으로 하고, “약간인”을 “약간 명”으로 하며, 제2항 중 “민원담당관”을 “민원조사담당관”으로 “민원 담당관 민원담당사무관”을 “민원조사담당관 민원조사담당사무관”으로 한다.

제11조 조문 제목 “수당등”을 “수당 등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2항 후단 중 “소요되는”을 “드는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수정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서울특별시민원조정위원회조례</u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</u></p>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민원사무처리</u> <u>에 관한 법률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</u> <u>다) 제29조</u>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 별시의 시정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 의·조정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<u>서울특별시민원조정위원회(이하 “위</u> <u>위원회”라 한다)</u>의 구성·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<u>민원사무처리</u> <u>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서울특별시</u> <u>민원조정위원회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기능)① <u>위원회</u>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</p> <p>1. 정당한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제 시 또는 시정 건의</p> <p>2. 부당하거나 무리한 민원사항에 대한 민원인의 설득</p> <p>3. <u>영 제29조제1항 각호</u>의 사항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<u>영 제29조</u> <u>의제2항 각호</u>의 사항 및 타법령에 의 하여 <u>해당위원회</u>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는 민원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</p>	<p>제2조(기능)① <u>서울특별시 민원조정</u> <u>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</u>-----</p> <p>1.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</u> <u>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37조제1항</u> <u>각 호</u> ----</p> <p>② ----- <u>제37조</u> <u>의제2항 각 호</u>의----- -----<u>해당 위원회</u>----- -----.</p>
<p>제3조(구성)①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행 정(1) 부시장이 된다.</p>	<p>제3조(구성)① (현행과 같음)</p>

② 위원은 법조계, 학계, 언론계, 종교계, 노동계, 경제계, 여성계, 기타민원사항에 관련된 분야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받은 자로 한다.

③ 위원장은 민원인이 자기가 제출한 민원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특정인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주기를 희망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외에 그 특정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제4조(위원의 위촉방법) 위원은 위원회의 개최시마다 위원장이 위촉하고 위촉위원은 당해 회의의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다.

제5조(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)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.

② 삭제

제6조(회의의 구성)① 위원회의 회의는 민원사항에 따라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시마다 민원사항을 고려하여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되, 시의회에서 추천받은 자가 2인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-----
----- 그 밖의 민원 -----

-----,

③ (현행과 같음)

제4조(위원의 위촉방법) -----

----- 해당 -----
-----,

제5조(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)① (현행과 같음)

② 삭제

제6조(회의의 구성)① -----
----- 7명 -----
-----,

② -----

----- 2명 이상 -----
-----,

<p>제7조(회의의 소집등)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</p> <p>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4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, 장소 및 안건을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④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에 제출된 민원 사항 중에서 위원회에 부의할 민원 사항을 결정한다.</p>	<p>제7조(회의의 소집 등)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4명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8조(회의록등)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.</p> <p>② 회의록에서는 회의의 일시 및 장소, 출석위원의 직, 성명, 회의안건과 심의 내용등을 기록하여야 한다.</p>	<p>제8조(회의록 등)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</p> <p>내용 등-----.</p>
<p>제9조(간사)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.</p> <p>② 간사는 민원담당관이 되고, 서기는 민원담당관 민원담당사무관이 된다.</p>	<p>제9조(간사)① -----</p> <p>----- 간사 1명 -----</p> <p>--- 약간 명-----.</p> <p>② --- 민원조사담당관-----</p> <p>민원조사담당관 민원조사담당사무관-----.</p>
<p>제10조(의견청취 및 조사)① 위원회는 민원인과 민원사항과 관련된 서울특별</p>	<p>제10조(의견청취 및 조사)①~② 현행과 같음)</p>

시 소속 국장 또는 과장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민원사항과 관련된 서울특별시 소관의 서류를 열람, 조사할 수 있다.

제11조(수당등)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제1항의 위원(공무원인 위원은 제외한다)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료조사에 소요되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.

제11조(수당 등)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드는 -----
-----,